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60 발의연월일: 2024. 11. 18.

발 의 자:이헌승·박성민·김상훈

김 건 · 곽규택 · 김소희

김선교 • 서지영 • 서범수

박덕흠 • 윤상현 • 조경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감독원은 2012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해당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음.

그러나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중에도 계속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채 권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 부과 제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 정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 신설

등).

법률 제 호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제7조"를 "제7조(제2항은 제외한다)"로 한다.

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적용범위) ① (생 략)	제3조(적용범위) ① (현행과 같		
	음)		
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	②		
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			
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			
우에는 <u>제7조</u> 를 적용하지 아니	제7조(제2항은 제외한다)		
한다.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제7조(연체이자의 제한 등) ①	제7조(연체이자의 제한 등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②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		
	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		
	일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		
	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연체이자		
	<u>를</u> 받을 수 없다.		
<u>②</u> · <u>③</u> (생 략)	$\underline{3} \cdot \underline{4}$ (현행 제2항 및 제3항		
	과 같음)		